

의안번호	2215313
의 퇴 인	김소희 의원
회 답 일	2026.2.19.
추계번호	25B6994
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1조(고령자의 고용안정 조치)	사업주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(제1항) 1. 「국민연금법」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될 때까지 정년의 연장 2.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건강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제1호의 연령까지 재고용 3. 정년의 폐지	의무규정
		사업주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「근로기준법」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(年次有給)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		사업주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임금조정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함(제3항 신설)	의무규정
2	안 제21조의2(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)	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22조(정년 연장 및 폐지에 대한 지원)	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 및 폐지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, 자문,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21조(고령자의 고용안정 조치)	—	• 미대상(제1항) －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년퇴직자의 재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－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정년 연장, 재고용, 정년 폐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의 시행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－ 개정안에 따른 고용안정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. 「국민연금법」 제61조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될 때까지 정년의 연장 2.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건강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제1호의 연령까지 재고용 3. 정년의 폐지
		—	• 미대상(제2항) －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「근로기준법」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(年次有給)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－ 개정안은 동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사업주가 정년에 도달한 사람을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, 임금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		—	• 미대상(제3항) －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임금조정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¹⁾까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2	안 제21조의2 (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)	×	• 미첨부 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- 본문 참조
3	안 제22조(정년 연장 및 폐지에 대한 지원)		

2. 상세 사유

□ (안 제21조의2)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「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(이하 “고령자고용법”)」 제21조²⁾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- 개정안은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건강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재고용(안 제21조제1항제2호)을 규정하면서 이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, 개정안의 시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
- 1) 제19조의2(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)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(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)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- 2) 제21조(정년퇴직자의 재고용)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「근로기준법」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(年次有給)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.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기존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 사업의 추진 여부 및 그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,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산출하기 어려우며, 장려금 지급 등 지원 사업의 대상 및 요건 등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소요 비용을 추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, 「고령자고용법」 제21조의2³⁾ 등에 근거하여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,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⁴⁾ 등을 추진하고 있음

[표 1] 현행법 제21조의2에 따른 재정사업 추진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2022 결산	2023 결산	2024 결산	2025 예산액	2026 예산액
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	22,631	19,101	18,467	35,706	22,493
고령자고용지원금	22,567	71,659	58,787	21,016	20,382
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	643	374	—	—	—
고령자통합장려금	—	—	—	—	10,684

자료: 고용노동부

- (안 제22조)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, 자문,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기존 사업의 확대 규모와 신규 사업의 추진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,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, 현행 「고령자고용법」 제22조⁵⁾를 직접적인 근거 조항으로 하여 추진 중인 재정사업은 없으므로,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추진할 신규 사업의 규모에 따라 결정됨
 - 다만, 현시점에서 정년 연장 및 폐지와 관련한 사업체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산출하기 어려우며, 상담·자문·장려금 지급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소요 비용을 추계하기 곤란

3) 제21조의2(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지원)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거나 그 밖에 정년퇴직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4)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사업(코드:1347-350)의 내역사업

5) 제22조(정년 연장에 대한 지원)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 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, 자문, 그 밖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남 희	예승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 희	02-6788-3737	nhee@nabo.go.kr